

1. 개정이유

「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(법률 제18635호, 2021.12.28. 공포)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전기획의 내용 및 사전기획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이수해야 하는 교육의 내용 등을 정함

2. 주요내용

가. 사전기획의 내용 등(안 제4조의2)

사전기획에 포함하여야 할 내용 중 교육 및 공공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주변 시설과의 연계 방안, 생태 및 스마트 학습환경 조성, 안전 및 보건 위해요소 최소화 등을 규정

나. 사전기획 교육과정 등(안 제4조의3)

건축사 및 민간전문가 등이 사전기획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이수해야 하는 교육시간, 내용 등을 규정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 예정

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의2 및 제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조의2(사전기획의 내용 등) 법 제26조의2제1항제6호에서 “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.

1. 주변 유사 교육시설·유흥시설과의 연계 활용 및 특화 방안
2. 수목 및 생태환경 조성 및 관리 방안
3. 스마트 학습환경 조성 및 관리 방안
4. 건축물등의 배치, 일조, 조망, 보행동선, 공간 활용 계획
5. 긴급대피시설 등의 사용 방안
6. 시설 운영·활용 계획
7. 사업 시행에 따른 안전, 보건, 환경 분야 등의 위해요소 예측 및 최소화 방안
8. 그 밖에 쾌적성, 편의성 및 창의성 등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4조의3(사전기획 교육과정 등) ① 영 제24조의2제2항에서 “교육부장

관이 정하는 교육과정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신규교육 및 보수교육을 말한다.

1. 국가기관, 시·도교육청

2. 법 제26조의2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

3. 「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」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

② 신규교육은 사전기획 착수 전에 이수하여야 하며, 보수교육은 신규교육 이수 후 5년마다 이수해야 한다.

③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시간 등 세부사항은 별표와 같다.

④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 교육과정을 운영할 때에는 제3항에 따른 교육시간 등을 기준으로 매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·운영해야 하며,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 교육훈련 계획 및 전년도 교육훈련 운영실적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

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2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

사전기획 교육·훈련의 시간 및 내용(제4조의3제3항 관련)

교과목	시간	내용
1. 법령 및 사업계획	1	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 교육시설 사업에 관한 사항
2. 교육과정	2	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·학습 방법
3. 교육기획	2	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공간환경 학교 사용자 참여를 통한 공간환경 조성
4. 공간기획	2	초·중등학교 공간환경 조성 교육시설 디자인 전략 및 사례
5. 보고서 작성요령	1	사전기획 보고서 작성 사례
소 계	8	

비고

1. 사전기획 업무를 의뢰받은 자는 사전기획 업무를 수행하기 전까지 상기 교육·훈련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.
2. 신규교육 이수 후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5년이 경과한 자는 사전기획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.
3. 신규교육 이수 후 5년마다 실시하는 보수교육은 신규교육 시간의 1/2 이상으로 한다.
4. 교육은 사이버교육의 형태로 실시할 수 있다. 이 경우 평가를 실시하여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득점한 자에 대해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4조의2(사전기획의 내용 등) 법</u> <u>제26조의2제1항제6호에서 “교</u> <u>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”이란</u> <u>다음 각 호를 말한다.</u> <u>1. 주변 유사 교육시설·유희시</u> <u>설과의 연계 활용 및 특화 방</u> <u>안</u> <u>2. 수목 및 생태환경 조성 및 관</u> <u>리 방안</u> <u>3. 스마트 학습환경 조성 및 관</u> <u>리 방안</u> <u>4. 건축물등의 배치, 일조, 조망,</u> <u>보행동선, 공간 활용 계획</u> <u>5. 긴급대피시설 등의 사용 방</u> <u>안</u> <u>6. 시설 운영·활용 계획</u> <u>7. 사업 시행에 따른 안전, 보건,</u> <u>환경 분야 등의 위해요소 예</u> <u>측 및 최소화 방안</u> <u>8. 그 밖에 쾌적성, 편의성 및</u> <u>창의성 등을 구현하기 위해</u> <u>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</u>
<u><신 설></u>	<u>제4조의3(사전기획 교육과정 등)</u> <u>① 영 제24조의2제2항에서 “교</u>

육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”
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
해당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신
규교육 및 보수교육을 말한다.

1. 국가기관, 시·도교육청
2. 법 제26조의2제3항제1호 또
는 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
3. 「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」
제13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
기관

② 신규교육은 사전기획 착수
전에 이수하여야 하며, 보수교
육은 신규교육 이수 후 5년마다
이수해야 한다.

③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시
간 등 세부사항은 별표와 같다.

④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
관이 교육과정을 운영할 때에는
제3항에 따른 교육시간 등을 기
준으로 매년 교육훈련 계획을
수립·운영해야 하며, 매년 1월
31일까지 해당 연도 교육훈련
계획 및 전년도 교육훈련 운영
실적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
야 한다.